

출산 · 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할인특약

출산 · 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할인특약 약관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적용범위

이 특약은 회사가 어린이보험으로 정하는 상품 중 유효한 계약(이하 ‘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 3 조 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

① 계약자(미성년자인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후견인인 경우,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상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성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저축성 특약을 제외하고 할인을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기간 중인 경우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상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할인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제2항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⑤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대상계약 당 1회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각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다만, 후견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추가 제출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다만, 후견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추가 제출

2.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상계약의 기본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연만기 갱신형 상품의 경우, 기본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포함)

2. 이미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

3.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 으로 보험료 납입유예를 이미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예시 안내

· 2026년 7월 1일 첫째 자녀 출생, 2029년 12월 1일 둘째 자녀 출생 가정

구분	할인신청사유	설명	예시
출산	첫째 출산 후 1년 이내	피보험자인 첫째의 계약은 할인 불가	■ 첫째 자녀가 대상계약에 가입한 경우 → 첫째 자녀의 대상계약은 '피보험자 본인 출생'에 해당하므로 할인 불가
	둘째 출산 후 1년 이내	피보험자인 둘째의 계약은 할인 불가 피보험자가 아닌, 첫째의 계약은 할인 가능	■ 첫째 자녀가 대상계약에 가입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첫째 자녀의 계약은 '피보험자 본인 출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인 가능 → 둘째 자녀의 계약은 '피보험자 본인 출생'에 해당하므로 할인 불가
육아 휴직	첫째로 인한 육아휴직 중	첫째로 인한 육아휴직시 첫째의 계약 할인 가능	■ 첫째 자녀가 대상계약에 가입한 경우 → 첫째 자녀의 대상계약 할인 가능 → 둘째가 대상계약에 가입했다면, 둘째 보험계약도 할인 가능
	둘째로 인한 육아휴직 중	둘째로 인한 육아휴직시 첫째와 둘째 계약 모두 할인 가능	■ 둘째 자녀가 대상계약에 가입한 경우 →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 할인 가능 → 첫째가 대상계약에 가입했다면, 첫째 자녀의 보험계약도 할인 가능 ■ 둘째 자녀가 대상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첫째 자녀가 대상계약에 가입했다면, 첫째 자녀의 대상계약 할인 가능

※ 단, 대상계약 당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인 신청 가능

제 4 조 보험료 할인의 적용

- ① 계약자가 제 3 조(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대상계약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할인 금액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릅니다.
- ② 제 3 조(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 제6항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접수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

제 5 조 보험료 할인의 적용 기간

- ① 제 4 조(보험료 할인의 적용)에 의해 대상계약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시점부터 1년(12개월)간 적용합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